조정사례 2020 - 4호
(2020.10.28.)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

'부제소합의' 관련 분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SUPERVISORY SERVICE

본 조정사례는 동일 분쟁의 반복접수를 방지하고 일률적인 분쟁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정사례의 공유를 통해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손해의 분담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 요

□ 사건번호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20-74호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20-93호

□ 주요쟁점

○ 부제소합의 해당 여부(손해배상 합의 이후 추가청구 가능 여부)

□ 진행사항(세부)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20-74호

- 2017.01.24. : 교통사고 발생(피신청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신청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 주요 진단명 : 경・요추 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
- 2017.02.13. : 경추 수핵성형술 시행
- 2017.06.23. : 대인손해배상 합의
- 2020.03.16. : 추간판 탈출에 대한 장애진단서 발급 및 손해배상금 추가청구(분쟁 발생)
- 2020.04.13.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20-93호

- 2018.10.24. : 교통사고 발생(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피신청인차량이 교차로 내 좌회전 및 선행차량 추월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신청인을 충격한 사고 / 주요 진단명 : 대퇴골 경부골절 및 수술시행)
- 2019.09.16. : 대인손해배상 합의
- 2020.02.14. : 대퇴골 무혈성 괴사발생 및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여 손해배상금 추가청구(분쟁 발생)
- 2020.05.22.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주장사항

신청인

ㅇ 추가 손해배상 청구 인정 주장 (부제소합의 미해당)

1) (2020-74호) 합의 이후 수상부위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장애진단서가 발급된바, 후유장애는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발 손해에 해당하므로 추가청구 가능함을 주장

2) (2020-93호) 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한 부상 및 장애 합의 이후 5개월 만에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바, 이는 새로운 손해로 봄이 타당하여 추가청구 인용 주장

피신청인

ㅇ 추가 손해배상 청구 불인 주장 (부제소합의 해당)

1) (2020-74호) 신청인은 사고 발생 1개월 만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음은 물론 사고 발생 6개월 경과 후 합의를 진행한바,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병변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에 따른 장애진단서 발급시점 역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 또한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추가청구 불인 주장

2) (2020-93호) 신청인이 발급받은 ○○대학교병원 장애진단서를 보면 『향후 대퇴골 경부 골절의 합병증인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나 불유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무혈성괴사 발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기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청구 불인 주장

Ⅱ 조정 결과

▣ (2020-74호) : 신청인 추가청구 기각 (부제소합의 해당)
▣ (2020-93호) : 신청인 추가청구 인정 (부제소합의 미해당)

Ⅲ 결정 이유

□ (2020-74호)

○ 2017.01경 발생한 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신청인은 1개월 만인 2017.02. 수상부위(경추 및 요추)의 수핵성형술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4개월 후인 2017.06. 대인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바, **합의 당시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장애의 발생 역시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장애 진단서 발급시기는 2020.03. 경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바,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청구 기각**

□ (2020-93호)

○ 신청인의 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최초 합의 이후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출한 금액이 최초 합의금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신청인이 초과액 부분까지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인정 타당

붙임 1. 관련 규정

□ 민법 제104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9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731조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33조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관련 판례 및 사례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의 '합의'

ㅇ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서 가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 지급방법을 약정하고 피해자는 그 이상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일체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2. '부제소합의'의 의미

ㅇ 사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공제)금을 확정함과 아울러 차후로는 이와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 (대법원 92다589)

3. '부제소합의'의 판단기준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ㅇ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98다58825) *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의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다58825, 대법원 2002다38927 등)

□ 착오에 의한 취소 인정 여부

ㅇ **민법 제733조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2다18435)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의 의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91다47208)

□ 합의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대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

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추가청구 인정 요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①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②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③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다16078, 99다63176 판결 등)

4. 피해자의 추가청구 불인 사례 (부제소 합의 인정)

1) 원고가 유족들의 위임을 받은 다음, 위 사고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피고로부터 보험금 25,041,020원을 받는 대신 향후 민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특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 (대법원 2002다38927)

원고는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에 불과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 운전 17년 및 농업 7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도 모두 성년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 당시 대리인인 원고가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당시 본인인 원고들이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급박한 궁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중략),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측이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도의 금액 차이만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1997.4.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의 부상을 입고 같은 해 10월 20일 고관절 운동제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1997. 12.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우측 하지 단축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 99다63176)

피고의 우측하지단축의 장해는 늦어도 우대퇴부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1997.7.28.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단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다시 그에 대한 장해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것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우측 하지단축의 장해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받은 우대퇴부 골절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우측 하지단축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위 장해로 인한 손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1이 산부인과 의원에서 위 피고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 2를 출산한 후 퇴원하였는데 수술창상의 감염으로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의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고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어 같은 날 원고 3에게 그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증상이 완치되지 아니하고 평생동안 채소류와 육류를 먹지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었으므로 위 합의는 원고들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를 주장한 경우(대법원 90다16078)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합의 당시 및 소장 유착박리 수술 시행 후 원고 1의 증상에다가 이 사건 합의금액은 6,000,000원인데 같은 원고가 카톨릭병원에서 농양 배농술을 받고 퇴원할 때까지의 기왕 치료비가 3,968,120원이고 위 소장 유착박리 수술의 치료비가 1,571,100원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점 등을 합쳐 살펴보면, 위 소장 유착박리 수술로 인한 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전혀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서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4)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 1,650,000원을 받고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앞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장애 발생을 이유로 추가 청구한 경우(대법원 99다39418)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내측 인대손상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가 손해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가 입은 후유장해는 위 합의 당시 알고 있었던 내측 인대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로서는 그와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장해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

5. 피해자의 추가청구 인정 사례 (부제소 합의 불인)

1)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9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경우(대법원 2004다60577)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병환 중인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 형편이 아니었으며 두 자녀로부터 조속한 귀가를 종용받고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사고 후 불과 17일만에 체결**된 것인바, 당시 원고는 입원 치료 중이며, 이미 담당 의사로부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인데도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퇴원 가부 문의에 대하여 원고의 상태가 심하지 않으니 피고와 합의하고 퇴원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 (중략),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의 궁박 상태와 그로 인하여 야기된 원고의 경솔한 판단에 터잡아 이루어졌고, 그 내용에 있어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며, 위 합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불안상태 및 경솔함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부제소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한 바, 그렇다면 **위 부제소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고 발생 10일 정도 지나 합의한 뒤 의료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대법원 96다46903)

문제가 된 합의가 치료 도중으로서 **사고 발생 후 겨우 10일 정도 지나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하기 불가능한 것이고, **사망이 예견되었더라면 그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뒤늦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위 합의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손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3) 사고 당시 3세 8월 남짓 된 피해자의 모와 보험자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319,600원에 합의성립 후 추가 청구한 사례 (대법원 97다423)

원고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 후 수면장애,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 장애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점점 악화되어 38.8%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이 금 44,491,668원 정도로 산정되는 바, 이는 **합의 시점에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손해라고 보이고, 따라서 위 합의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떤 후유장애에 관하여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4)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 치료중 그 부모가 향후 그 사건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대법원 90다12403)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 치료 중 그 부모가 향후 그 사건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그 각서 작성 당시까지의 치료비만도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금 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의 부모가 사리를 잘 모르고 가해자 측의 치료비 보조를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별 생각없이 가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가져온 위 각서에 이름만을 무인한 사정이 엿보이며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일반노동능력의 85%를 상실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위 금 500,000원의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5)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 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온 경우 (대법원 2001다9496)

교통사고로 심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6)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 4,5 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대법원 91다30057)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상실이 예상된다면 위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 4,5 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본 사례

붙임 3.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 [2020-74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조 서

1. 번호 및 사건명 : 제4-20호(분쟁 2020-74) 대인손해배상분쟁

2. 분쟁 당사자

ㅇ 신 청 인 : ○○○ (여, 사고 당시 만 56세)
ㅇ 피신청인 :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3.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가. 사실관계

ㅇ 피신청인은 조합원 ○○○과의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계약자동차 : ○○○○○호, 공제기간 : 2016.○○.○○.~2017.○○.○○.)을 체결한 사실.

ㅇ 2017.01.24. 01:05분경 ○○시 ○○구청 앞에서 피신청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신청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은

가) 본 사고에 대하여 2017.06.23. 대인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추가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2019.12경, 2020.03경에 <u>교통사고 관여도 30%~40%의 소견</u>을 확보한바, 신청인이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따라 **척주손상 Ⅴ-A항 23%, 사고 관여도 40% 9.2% 3년 한시장애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는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발손해에 해당하는바,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음**을 주장.

나) 신청인은 본 사고로 추간판탈출에 대한 수술비용, 치료비용으로 7,601,710원을 직접 납부한바, **사고 관여도 40%에 따른 3,040,680원**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2)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은 본 교통사고 발생 3주 후인 2017.02.13. 경·요추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후 **본인의 기왕질병을 인정하여 치료병원으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점, 이후 4개월여가 지난 이후에 피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한 것은 신청인의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이며 이로 인한 장애도 청구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새로운 손해로 보는 것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제소 합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합의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을 주장.

나) 2017.06. 합의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 담당자 간에 경추 및 요추의 수술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른 점,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면 수술비용 및 재료비 전액이 비급여 항목이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직불치료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

4. 조정결정 사항

가. 의결내용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 유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교통사고로 인한 신청인의 대인손해배상금에 대한 분쟁으로 제4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대법원 99다42797), 신청인은 2017.02.13. 수상부위(경추 및 요추)의 수핵성형술을 시행하고 4개월 후인 2017.06.23. 대인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 당시 추간판 탈출에 의한 장애가 예상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장애 진단서 발급시기는 2020.03. 경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바,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의결내용과 같이 결정한다.

2020년 7월 24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붙임 4.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2020-93]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안

1. 번호 및 사건명 : 제4-26호(분쟁 2020-93) 대인손해배상분쟁

2. 분쟁 당사자

ㅇ 신 청 인 : ○○○ (여, 사고 당시 만 50세)

ㅇ 피신청인 :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3.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가. 사실관계

ㅇ 피신청인은 조합원 ○○○과의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계약자동차 : ○○○○○호, 공제기간 : 2017.○○.○○.~2018.○○.○○.)을 체결한 사실.

ㅇ 2018.10.24. 08:05분경 ○○시 ○구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피신청인차량이 교차로 내 좌회전 및 선행차량 추월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신청인을 충격한 사고.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은

가) 신청인은 본 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한 관혈적 정복술 시행 후 1.7cm의 단축으로 인한 고관절 Ⅱ-A-1 항의 2/3인 8% 영구장애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 이후 5개월 만에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바, 이는 새로운 손해의 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관절 강직 Ⅱ-D항 15% 영구장애**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나) 신청인은 고관절 전치환술로 인한 입원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바, **추가 입원기간 49일(2020.02.12.~2020.03.31.)간의 휴업손해** 및 이후 가동 종료일까지 상실수익액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다) 신청인은 **후발손해로 인한 직불치료비용 11,258,460원**을 직접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전액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라) 신청인은 후발 손해 부위(**우측 골반부 17cm**) 수술 반흔에 대한 향후 반흔 교정술, 레이저 치료 등의 비용으로 신청인이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6,820,620원의 성형 향후치료비와 전치환술 향후치료비용 10,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마) 신청인은 후발손해로 인한 **추가 입원기간 49일 중 7일간 간병비를 실제로 지출한바, 700,000원의 개호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2) 피신청인은

가) 부제소 합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례 피고는 1997. 4. 7.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경까지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7. 12. 4.에 이르러 이 사

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 남은 우측하지단축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의 결과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1997. 7. 28.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한일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록 40 내지 42면, 111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우측하지단축의 장해는 늦어도 우대퇴부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1997. 7. 28.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단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다시 그에 대한 장해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것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우측하지단축의 장해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받은 우대퇴부 골절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우측하지단축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위 장해로 인한 손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9다63176 판결)

나) 상기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되는 사안은 본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 측과 **합의를 시행할 당시 신청인이 발급받은 ○○대학교병원 장애진단서를 보면 『향후 대퇴골 경부 골절의 합병증인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나 불유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합의 당시 무혈성 괴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합의는 **화해 목적의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의 대인손해배상책임은 이행 완료되었음을 주장.

4. 조정결정 사항

가. 의결사항

이 사건은 2020년 제4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고관절 15% 영구장애, 추가 입원기간 49일에 대한 휴업손해, 직불치료비 11,258,460원, 성형 향후 치료비 4,650,000원, 정형외과 향후치료비 10,000,000원(현가 계산), 개호비 700,000원을 인정하되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산정 기초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기준에 따라 100,000,000원으로 적용하여 법원 예상판결금액의 85%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나. 이 유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서상 무혈성 괴사의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전제로 최초 합의가 후발손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제소 합의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최초 합의 이후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출한 결과, 최초 합의금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신청인이 초과액 부분까지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본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추가 대인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② 양 당사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나이, 사고 경위,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고관절 강직 Ⅱ-D항 15% 영구장애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③ 신청인은 후발손해의 발생으로 추가 수술 및 치료를 위한 기간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바, 실제 입원기간동안 2020년 상반기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④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치료비(수술비용)는 후발손해의 치료를 위한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판단되는바, 11,258,460원 전액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⑤ 신청인의 수상 부위, 나이, 사고 발생 경위, 치료 경과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고려하여 성형 향후 치료비 4,650,000원, 정형외과 향후 치료비 전치환술 비용 10,000,000원을 인정하되 최초 전치환술 수술일로부터 15년 이후 1회 지출[현가 (호프만 계수 적용 중간이자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⑥ 신청인은 후발손해의 발생으로 추가 입원기간 동안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제 지출한 개호비 700,000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⑦ 신청인의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산정 기초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의 기준 100,000,000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⑧ 본 조정안을 기초로 산출된 손해배상금은 예상판결액 기준으로서 소송경제의 이익을 고려하여 총 손해액의 85%를 인정하되 기지급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결정내용과 같이 조정한다.

2020년 7월 24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